

## 『스타트업 해외전시회 지원』 VIVA TECH 2023 전시회 참가기업 모집공고

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프랑스 『VIVA TECH 2023』 전시회 참가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4월 20일  
중소벤처기업부 장관

- ※ K-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서울신용평가정보 (SCII)를 통한 실명인증이 필요합니다. 실명정보가 서울신용평가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(개명인, 외국인, 미성년자 등 인터넷 실명 확인 불가능자)에는 사전에 SIREN24를 통해 실명등록 및 적용을 요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실명 등록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)  
\* K-Startup 누리집 - 고객센터 - 온라인매뉴얼 - 일반매뉴얼 - K-Startup 창업기업 실명등록 매뉴얼 참고

### 1 모집개요

- 사업목적** : 유럽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기업 해외 전시 지원을 통해 참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도모
- 지원대상** : 모집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
  - \* 단,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(유망 신산업 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)에 따라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신산업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업력 10년까지 신청가능
- 지원규모** : 13개사 내외
  - \* 대내·외 상황에 따라 지원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
- 참여 전시회** : VIVA Technology 2023('23.6.14(수)~17(토)/프랑스 파리)
- 지원내용** : ① 전시지원 (K-STARTUP 통합관 개별부스 최대 2일간 지원), ② 마케팅 (투자자 발굴, 전시회 현장 마케팅 등)

※ 지원 내용은 대내·외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

## 2

## 지원내용

## □ 지원사항 세부내용

※ 공고문 상 지원내용은 대내외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- ① (전시지원) K<sup>STARTUP</sup> 통합관(274.5sqm 규모) 운영하며, 통합관 내 참가기업별 개별 부스 최대 2일간\* 지원
- (전시장) 디자인은 오픈형 구조이며, 참가팀별 부스 위치는 통합관 운영기관별 부스 위치 구분 후 기업들 간 추첨을 통해 위치 선택 예정
  - \* 전시기간 4일 중 2일 제품전시를 할 예정이며, 그 외 2일은 VIVA TECH 2023 내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참여 예정
  - (E-Booth 전시) VIVA TECH 온라인 플랫폼에 참가기업의 정보를 사전 등록하여 전시 참여 바이어에게 기업 홍보를 통해 현지 미팅 예약 추진
  - \* 참가기업의 제품정보문서, 홍보 동영상, 회사 연락처 및 소셜미디어 정보 등록 및 조회, 참가기업-바이어 간 채팅 기능 등 제공
- ② (마케팅 지원) 전시회 참가 전 현지 투자자 발굴, 전시회 현장 홍보지원, 전시회 사후 성과홍보 지원 등
- (투자자 발굴) 현지 또는 전시회 참가 투자자 대상 참가기업 사전 홍보를 통해 투자자 매칭 지원
  - (전시홍보) K<sup>STARTUP</sup> 통합관 홍보물 내 참가기업 소개자료 제작, 통합관 공동 디스플레이 내 소개 영상 재생 등 현장 홍보 지원
  - \* 통합관 내 피칭스테이지를 활용한 참가기업 IR피칭데이 등 현장 프로그램 운영
  - (성과홍보) 행사 종료 후 국내에서 행사 주요내용(트렌드, 시장정보 등) 공유, 지원성과 홍보 및 네트워킹 등을 위한 리뷰세미나 개최

## □ 참가기업 지원항목

< 스타트업 해외전시회 지원 - VIVA TECH 2023 지원항목 >

| 구분             | 항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정부지원 | 지원불가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
| 홍보 및 마케팅       | - K <sup>STARTUP</sup> 통합관 디렉토리북 제작 | ○    | -    |
|                | - K <sup>STARTUP</sup> 통합관 홍보 및 마케팅 | ○    | -    |
| 현지 운영          | - 기업별 부스 임차 및 전시관 구축                | ○    | -    |
|                | - 통합관.개별부스 운영 보조인력(2일간)             | ○    | -    |
|                | - 현지 네트워킹 구축지원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| -    |
| 전시참가 체재비& 물류비* | - 항공료, 현지 체류비(식비, 숙박비) 일체           | -    | ○    |
|                | - 전시품 운송비 및 관세 등 물류비 일체             | -    | ○    |

\* 전시 참가 체재비(항공, 숙박 등) 및 물류비는 참가기업 부담

### 3

##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

### □ 신청자격

○ (창업기업) 모집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\*

- '16.4.19. ~ '23.4.20.(신산업 '13.4.19~'23.4.20)에 창업한 기업

\* 단,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(유망 신산업 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)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신산업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업력 10년까지 신청가능

→ 창업진흥원의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신산업 창업 분야 확인

#### < 신산업 창업 분야 >

|   |        |   |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|
|---|--------|---|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|
| ① | 인공지능   | ⑨ | 시스템반도체    | ⑰ | 재난/안전            |
| ② | 빅데이터   | ⑩ | 자율주행차     | ⑱ | 스마트시티            |
| ③ | 5G+    | ⑪ | 전기수소차     | ⑲ | 스마트홈             |
| ④ | 블록체인   | ⑫ | 바이오       | ⑳ | 신재생에너지           |
| ⑤ | 서비스플랫폼 | ⑬ | 의료기기      | ㉑ | 이차전지             |
| ⑥ | 실감형콘텐츠 | ⑭ | 기능성 식품    | ㉒ | CCUS(탄소포집·활용·저장) |
| ⑦ | 지능형 로봇 | ⑮ | 드론·개인이동수단 | ㉓ |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   |
| ⑧ | 스마트제조  | ⑯ | 미래형 선박    |   |                  |

▶ 개인사업자 :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기준

▶ 법인사업자 :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

▶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표자이자,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1항 및 2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

▶ 공동대표 또는 각자 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, 대표자 전원이 '신청자격'에 해당되고, '신청 제외 대상'에 해당 되지 않아야함

▶ 다수의 사업자등록증(개인, 법인)을 보유한 경우,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를 결정([붙임1] 「창업여부 기준표」를 참고하여 신청 전 창업여부 확인)

### □ 신청(지원) 제외대상

○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 제4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(기업)

\* 지원제외 대상 업종은 [붙임 2] 참고

○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(기업)

▶(예외사항) ①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 가능한 자, ②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, ③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,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 된 자, ④신용보증기금·기술보증기금의 '재도전·재창업 재기지원보증'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·신용회복위원회의 '재창업 자금지원'을 받은 자

-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(기업)

▶(예외사항) ①국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②국세·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, ③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(기업),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(기업)는 신청 가능

-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「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자(기업)
-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(기업)
-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해당하는 자(기업)
-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(기업)
-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(기업)

## 4

## 신청방법

- **신청기간** : 2023. 4. 20. (목) ~ 2023. 5. 8. (월), 16:00 까지

접수 마감시에는 다수의 신청자 접속으로 인해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거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**마감전 신청 부탁드립니다.**

- **신청방법** : K-Startup 누리집(www.k-startup.go.kr)에 접속하여 'VIVA TECH 2023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모집공고'를 통해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\* 온라인 제출

\* 사업계획서 양식 공고문 내 [별첨] 참조

\*\* 사업 신청은 신청(지원) 제외대상 여부 검토를 위해 반드시 **신청기업 대표자 본인**이 신청해야 하며, **대리 신청이 확인될 시 탈락처리 될 수 있음**

- ① www.k-startup.go.kr 접속 → ② 사업공고 → ③ 본 공고 검색 후 클릭 → ④ 하단의 '사업신청바로가기' 버튼 클릭 → ⑤ 신청서 작성 및 사업계획서 업로드 후 제출

- **제출서류** : 온라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신청 시 제출, 그 외 요건 검토를 위한 추가 증빙서류는 관련 사유 발생 시 제출

**< 제출서류 목록 >**

| 필수서류  |  |
|---|--|
| ① 참가신청서(온라인 서식)   | ④ 법인등기부등본(해당 시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② 대표자 신분증 사본  | ⑤ 사업계획서(별도양식_별첨양식)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③ 사업자등록증  | ⑥ 창업 여부 기준표[붙임 1.]를 참고하여 창업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* |
| * 총사업자등록내역의 내역 상 '계속' 중인 모든 사업자등록증, 폐업사실증명원, 창업 여부 확인서(창업기업용), 주주명부 등 |  |
| 추가 제출서류(선택사항)   |  |
| ○ 참가팀 홈페이지, 아이템 홍보 콘텐츠 등  |  |
| * 추가 제출서류는 평가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 | 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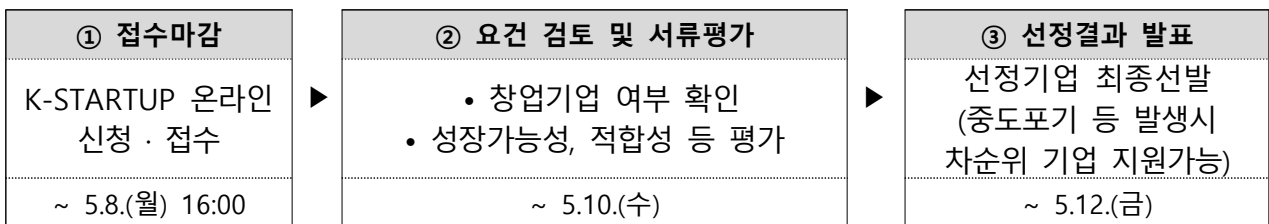
※ 참가자격 검토를 위한 필요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탈락 처리 될 수 있음

## 5 선정평가

- **지원규모** : 13개사 내외  
\* 대내·외 상황에 따라 지원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

- **평가방법** : 요건검토 및 서면평가 진행

**< 평가 절차 >**



- \* 평가는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하며, 필요시 전시회별 참여 적합성 평가를 위해 추가 자료(내용)를 요청할 수 있음
- \* 선정결과는 K-스타트업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예정

- **평가항목** : ① 해외전시회 참여 준비 완성도, ② 사업 아이템의 글로벌 성장 가능성, ③ 참여전시회 적합성 등

**< 평가항목별 세부 내용(안) >**

| 평가항목               | 세부내용  | 평가 참고자료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|   | 필수검토자료           | 참고자료                   |
| 해외전시회 참여 준비 완성도    | - 글로벌 관계자 대상으로 원활한 소통 및 홍보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자료 등의 준비 완성도     | 사업계획서 (아이템 특성 등) | ①홈페이지<br>②아이템 홍보 콘텐츠 등 |
| 사업 아이템의 글로벌 성장 가능성 | - 본 사업을 통한 사업 성장 계획의 구체성<br>- 핵심 서비스 및 제품에 대한 직접 기술력 보유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참여전시회 적합성          | - 전시회 및 전시 시장의 특성과 아이템과의 적합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
\* 평가 항목은 대내·외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

\* 동점자 발생 시 '글로벌 성장 가능성' → '참여 준비 완성도 → 참여 적합성' 항목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

**6 유의사항 및 문의처**

**□ 신청 시 유의사항**

- 신청 전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후 참가 신청하여야 하며, 모집 공고문 미확인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공고 신청자에게 있음
- 전시회 공통 일정(23.6.13(화)~17(토))\* 미준수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참여제한 및 지원 제외 등 제재 가능
  - \* 사전 창업기업 제품 전시 준비 일정 포함(1일)
  - \* 항공·숙박 개별 예약 시 창업진흥원에게 예약 일정 통보
- 선정평가 결과 전시회 참가 자격 미달 시(서류평가 만점의 60점 미만) 경우 전시회 참가지원에서 탈락 처리
- 신청·선정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, 도용,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등의 불이익 발생

거짓신청,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참가자격이 취소 될 수 있으며, "형법", "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", "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", "창업사업화 지원 사업 통합관리지침"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의 대상이 될 있음

- 동일 해외전시회 관련 본 지원사업 외 타 사업 또는 기관의 중복 지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될 시 참가자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, 본 사업의 지원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액 환수 가능

\* 예시 : 동일 해외전시회에서 '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'의 통합한국관에 수혜를 받는 경우 등

- 선정기업은 1인 이상의 대표자 또는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소속 임직원이 영어 또는 현지어에 능통하여 해외전시회 지원 프로그램에 전담으로 성실히 참여해야 하며 해외 출장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.
- 해외전시회 참가자는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현지에서 다음 사항\*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책임은 선정기업과 참가자에게 귀속됨

\* 현지 법규 준수, 비상 상황 등에 대비한 연락 체계 유지, 현지 질병 등에 대비하여 개인의 위생관리, 도난 및 분실 등에 대한 주의 등 프로그램 외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건사고 등

-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, 사후 성과 조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- 신청자격 중 창업기업 확인을 위해 유효기간 내 '창업기업확인서' 제출 혹은 창업여부 기준표(붙임 1.)에 따라 창업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

\* 업력 및 창업기업 확인 기준 관련 서류(총사업자등록내역, 내역 상 '계속' 중인 모든 사업자등록증, 폐업사실증명원, 창업여부 확인서(창업기업용), 주주명부 등)

## □ 문의처

- 접수 시스템 문의 : 국번없이 1357
- 사업관련 문의
  - 창업진흥원 글로벌창업협력실 (044-410-1712, 1719)

# 붙임 1

## 창업 여부 기준표

| 신청기업구분            | 상세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창업여부  |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|
| 개인기업              | 창업(사업을 개시한 날부터) 7년 이내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창업 기본요건   |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타인으로부터 상속/증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| 창업아님  |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  | 이종               | 창 업   |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| 창업아님  |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이종창업             | -   | 창 업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| 폐업 3년 초과  | 창 업             |
| 동종창업              |   | 폐업 3년 까지         | 창업아님  |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  | 부도/파산 - 2년 초과    | 창 업   |                 |
| 부도/파산 - 2년 까지     | 창업아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|
|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창 업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|
| 법인기업              | 창업(사업을 개시한 날부터) 7년 이내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창업 기본요건   |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이종창업             | -   | 창 업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| 폐업 3년 초과  | 창 업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  | 동종창업             | 폐업 3년 까지  | 창업아님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| 부도/파산 - 2년 초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창 업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부도/파산 - 2년 까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창업아님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  | 동종전환             |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|
|                   |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이종창업             | -   | 창 업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|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% 초과 또는 최대주주    | 창업아님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  | 동종창업             |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%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| 창 업             |
| 자회사 여부            | 법인주주(임원 포함)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% 초과 소유  |                  | 창업아님  |                 |
| 과점주주 여부           |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% 초과 소유 |                  | 창업아님  |                 |
| 회사형태 변경           | 동종유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창업아님  |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이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창 업   |                 |

- ※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: 양도기업(기존 개인사업자)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(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)이고, 양도-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, 동종 업종, 양도기업(기존 개인사업자) 폐업 완료, 양도기업의 권리·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
- ※ 동종의 범위 : '한국표준산업분류(제10차)'를 기준으로 세세분류(코드번호 5자리)가 모두 일치하면 "동종"
- ※ 과점주주 :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
- ※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(창업 범위의 변경에 따른 종전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) : ①2020.10.8.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시행령 제31108호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 
- "개인사업자 설립일이 '20.10.8. 이전이면서,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"한 경우 "창업"으로 판단
- ②영 시행(2022.6.29.)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



## 붙임 2

## 지원제외 대상업종

### □ 지원 제외 대상 업종

-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(기업)

| No | 대상 업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코드번호<br>세세분류*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1  | 일반유희주점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6211         |
| 2  | 무도유희주점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6212         |
| 3  |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                    | 91249         |
| 4  | 그 밖에 1~3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| -             |

\* 코드번호 세세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(5자리)를 기준으로 하며,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통계청, [kssc.kostat.go.kr](http://kssc.kostat.go.kr)) 참고

## 붙임 3

## 신산업창업 분야

### □ 신산업창업 분야

-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(유망 신산업 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)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신산업창업 분야(23개)
  - 창업진흥원의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신산업 창업 분야 확인 예정

|   |        |   |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|
|---|--------|---|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|
| ① | 인공지능   | ⑨ | 시스템반도체    | ⑰ | 재난/안전            |
| ② | 빅데이터   | ⑩ | 자율주행차     | ⑱ | 스마트시티            |
| ③ | 5G+    | ⑪ | 전기수소차     | ⑲ | 스마트홈             |
| ④ | 블록체인   | ⑫ | 바이오       | ⑳ | 신재생에너지           |
| ⑤ | 서비스플랫폼 | ⑬ | 의료기기      | ㉑ | 이차전지             |
| ⑥ | 실감형콘텐츠 | ⑭ | 기능성 식품    | ㉒ | CCUS(탄소포집·활용·저장) |
| ⑦ | 지능형 로봇 | ⑮ | 드론·개인이동수단 | ㉓ |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   |
| ⑧ | 스마트제조  | ⑯ | 미래형 선박    |   |                  |

□ 개 요

- 유럽 내 최대 규모 스타트업 행사로서 '16년 이후 올해로 일곱 번째 행사
  - ※ '22 기준 149개국 91,000명, 스타트업 1,800개사, VC 2,000여명, 미디어 41개사, 연사 450여명
- '22년 KIC유럽(과기부)이 국내 스타트업 8개사 대상 피칭데이(IR) 및 부스 전시 참가 지원을 통해 현지 투자자와 연결

< VIVA TECH 전경 >

< 마크롱 대통령 컨퍼런스 >



□ VIVA Tech 2023 주요 프로그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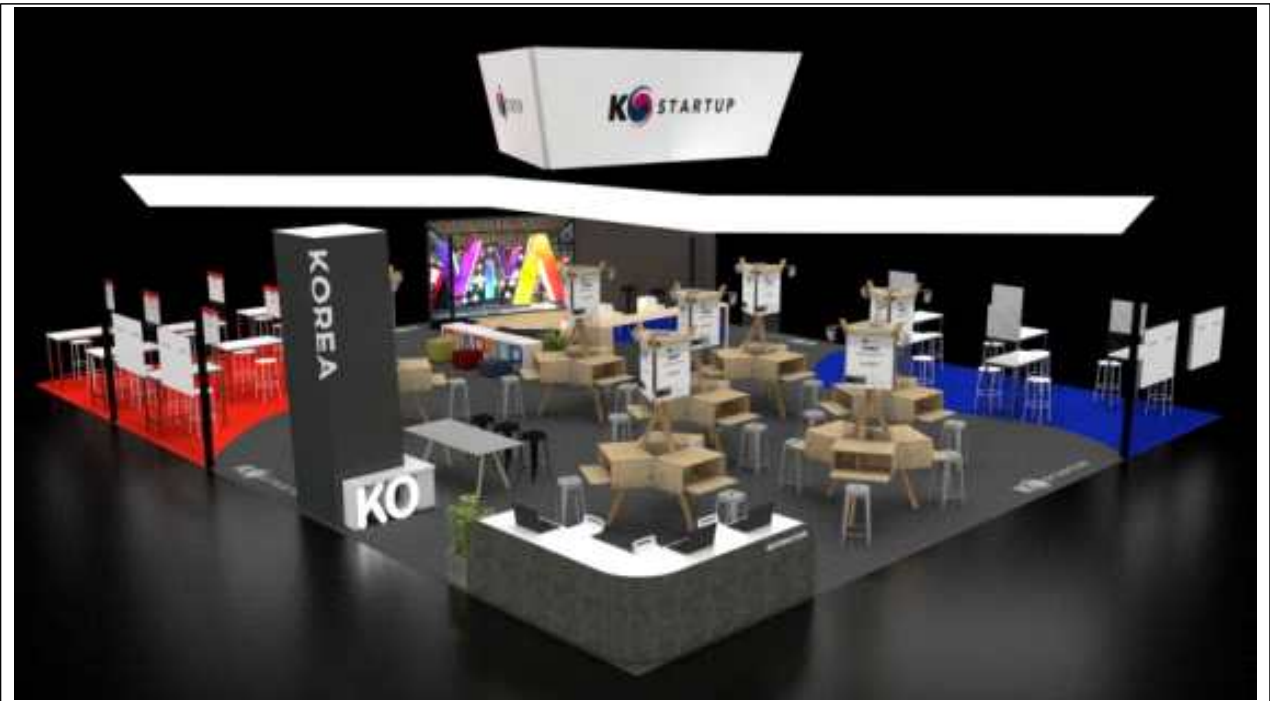
- ①참여기업 부스전시, ②Web3, AI, 사이버 보안 등 분야별 전문가 컨퍼런스, ③투자 유치 피칭 컨테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
- (글로벌 파트너사) Google, LVMH, BNP Paribas, Orange 등
- (부스 전시) VivaTech 랩첼린지 - 글로벌기업과 스타트업간 교류(LVMH, Huawei, Orange, La Poste 등)
- (전문가 컨퍼런스) 참여 글로벌 인사 - Werner Vogels (CTO, Amazon), Dan Schulman (CEO, Paypal), Bernard Arnault (CEO, LVMH), Bob Moritz (Chairman, PWC) 등
- (투자유치 피칭) VivaTech 피칭 컨테스트- 글로벌 기업과 주제별 참여 스타트업간 피칭 (예: TotalEnergies on : Build the future of electricity together)

## □ 전시관 지원 개요

### ○ (지원내용) VIVA TECH 2023 전시회 기본 부스 제공

- \* 전시기간 4일 중 최대 2일간 기업당 1개 부스 제공
- \* 전시회 지원 상황에 따라 지원내용 변동 가능

< VIVA TECH 2023 전시 Layout 및 부스 시안 >



- \* 전시 부스 위치 추후 결정, 부스 디자인 변동 가능